

2020년 지방 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020. 12.



제1장 ▶ 계약 일반 1

01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업체의 기술진단 수행 가능 여부	3
02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4
03 민간시설 임차계약 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5
04 공사기간 연장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특약 가능 여부	6
05 기술용역 경영상태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7
06 사무용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산정 가능 여부	8
07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9
08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11
09 1단계 사업자를 2단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2
10 본점·지점의 업종등록 인정 범위	13
11 본점·지점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14
12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16
13 개명 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17
14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	18
15 입찰(견적제출)자격 무효 여부	19
16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성립 여부	20
17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21
18 계약정보 공개 대상	22
19 입찰 시 특정규격·모델·상표 지정 가능 여부	23
20 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	24
2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 위배 여부	25
22 공사·용역이 혼재된 계약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	26

23 공사 일부 공종 별도 분리 발주 가능 여부	27
24 단가계약의 경우 원단위 절사 가능 여부	28
25 광고료 등의 계약심사 대상 여부	29
26 재공고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회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30

제2장 ▶ 입찰 및 계약 방법 31

01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33
02 2인 견적 공고 시 견적서 제한 가능 여부	34
03 수의계약 시 특정인의 의미	35
04 계약의 해지 후 해당계약 상대자와 다른 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36
05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37
06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38
07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금액	39
08 사회적기업 등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여부	40
09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41
10 다른 법령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42
11 견적제출 후 계약 포기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43
12 작업상 혼잡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44
13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직접생산 확인 방법	45
14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46
15 재난복구공사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적용범위	47
16 전자공개 수의계약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한	48
17 2인 견적 수의계약 견적제출 자격 및 계약체결	49

18 특허통상실시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50
19 신기술 적용공사 제한입찰 방법	51
20 지역제한 시 인접 시·도 포함 여부	52
21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 가능 여부	53
22 지명입찰 가능 여부	54
23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변경 가능 여부	55
24 종합계약 운영요령 상 동일장소 의미	56

제3장 ▶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57

0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인지 여부	59
02 발주기관의 승인통보 형식	60
03 외주 가공비의 비목	61
04 계약심사 심사대상 기준 추정금액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포함 여부	62
05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법	63
06 업자(생산자) 공표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인정 여부	64
07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65
08 산림조합과 사방사업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회신	66
09 산출내역서 오기에 따른 입찰무효	67
10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관련 질의 회신	68
11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 및 새로운 입찰 가능 여부	70
12 운반비의 예정가격 작성 비목	71
13 위탁 수수료 인정 범위	72
14 단가계약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금액의 범위	73

15	학술연구용역 원가(인건비) 산정기준	74
16	준공대가 지급 후 학술용역 경비 사후정산 가능 여부	75
17	학술용역의 책임연구원의 자격	76

제4장 ▶ 낙찰자 결정 기준 77

01	신규청년고용수 평가 방법	79
02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시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적용기준	80
03	물품 적격심사의 평가시 납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81
04	입찰공고일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의 인정 여부	82
05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 등급의 인정 여부	83
06	물품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의 의미	84
07	물품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고용기간 연속 여부	85
08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규정의 국제입찰 적용 여부	86
09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시 감사보고서 적용 기준	87
10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시 소수점 처리	88
1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 평가 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 산정 방법 질의	89
12	하도급 변경에 있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의미	90
13	하도급 추가 및 승인 여부	92
14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판단 기준	93
15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인정 여부	94
16	신인도 평가 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서 해당지역의 범위	95
17	신인도 평가 시 영업정지처분의 배점 적용 기간	96

18	신인도 평가 시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	97
19	신설 업체의 재무비율 평가 시 관련 협회 정기결산서 자료의 통보시점	98
20	공개된 명단에서 임금체불 위반 확인이 부분적으로 불가한 경우 신인도 평가방법	99
21	신인도 평가 시 평가요소의 기준일	100
22	시설공사 적격심사 접근성 점수 적용 여부	101
23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하도급 실적인정 범위	102
2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사고사망만인을 가중평균 산정 방법	103
25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적용 범위	104
26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105
27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의미	106
28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공경험 평가 실적 인정 범위	107
29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민간실적 인정 여부	108
30	관련법령에 별도 인·허가 사항이 없는 시설공사의 실적인정 가능 여부	109
3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시 최근 5년의 판단 기준	110
32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의 이행자격이 변경됐을 시 시공실적 인정 가능 여부	111
33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으로 물품과 시공비 합산 실적의 인정 가능 여부	112
34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기준 및 경영상태 평가 방법 질의	113
35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	114
36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임·귀속한 용역실적의 인정 여부	115
37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 부여방법	116
38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범위	117
39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인정 여부	118
40	기술용역 적격심사 관련 재무제표 적용연도	119

41	물품 또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120
42	제안서평가위원회 선정 시 입찰참가자의 추천횟수	121
4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122
4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123
45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관련 입찰기준일	124
46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기한	126
47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127

제5장 ▶ 계약 일반조건 129

01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차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131
02	소송 중 새로운 계약의 가능 여부	132
03	공사 지연업체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133
04	공사 계약해지 시 위약금 지급 가능 여부	134
05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135
06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136
07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공기산정 기준	137
08	거짓실적증명서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 해당 여부	138
09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주체	140
10	계약상대자가 경영난으로 계약 포기 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가능 여부	141
11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여부	142
12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계약기간 연장 시 지체일수 포함 여부	143
13	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 일수 산정	144

14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산정 기준	145
15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를 사유로 2차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여부	147
16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시 기납 부분 인정 가능 여부	148
17	하자 검사 비용부담의 주체 등 하자 검사 관련	149
18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해당 여부 및 인정 범위	151
19	공사정지 시 적용 대출금리	152
20	입찰 시 정한 특수조건의 인정 여부 및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153

제6장 ▶ 선금 및 대가지급 155

01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157
02	책임감리 용역비 기성금 정산 비율	158
03	사고이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계약 유지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	159
04	선금 반환 청구 시 하도급 대가와 기성대가 미지금액 상계 순서	160
05	선금사용 정산 시 인정 범위	161
06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지급 가능 여부	162
07	계약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163
08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	164
09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165
10	공동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166

제7장 ▶ 계약금액의 조정 167

0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169

0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여부 171

0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의 산정 방법 173

04 개산급 사유서 없이 기 수령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포함 여부 .. 174

05 국민체육센터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175

06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 인정 범위 176

07 계약금액 조정 인정 범위 177

08 물가변동 금액 산정 기준 공정표 179

09 준공금 지급 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80

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가격기준 적용 여부 181

11 수량산출서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182

12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방법 183

13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관급자재 비용 포함 여부 184

14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대가 지급 후 차수준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86

15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187

1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 188

17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가능 여부 189

제8장 ▶ 부정당 제재 및 과징금 부과 191

01 입찰 전 상호변경 등록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193
02 계약 체결과정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195
03 대표자에 변경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자	196
04 물품계약 하도급 시 부정당제재 대상 여부	197
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 사업자의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198
06 복수 대표인 법인사업자의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자	199
07 부정당제재 처분 면제 또는 유예 가능 여부	200
08 타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사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201
09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202
10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203
11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사유로 해당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204
12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205
13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206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받은 경고처분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사유인지 여부	208
1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시기	209
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210
17 제3자 뇌물 제공행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211
18 발주기관의 협약 미체결로 인한 낙찰자의 계약이행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212

19 부정당제재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214
20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척기간	215
21 입찰담합업체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216
22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실을 미 적시한 입찰 참가업체의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218
23 부정당 제재처분 제척기간 판단기준	220
24 계약체결 시 존재한 위반사유를 계약 이행 완료 후 제거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사유 해당여부	221
25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자를 변경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222
2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223
27 관계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224

제9장 ▶ 공동계약 225

01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의 공동계약 가능 여부	227
02 공동계약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단독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229
03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적정 여부	230
04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변경 승인 가능 여부	231
05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을 공동수급체로 제한 가능 여부	232
0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추가 선임 가능 여부	233
07 공동계약 구성의 적정성 여부	234
08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235

09 대표자가 동일한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 해당 여부	237
10 공동계약인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귀속 가능 여부	238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적용 여부	239
12 공동수급체의 실적 인정 범위	240
13 지역 의무 공동도급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해당 범위	241
14 지역 의무 공동도급 입찰 공고 시 시공능력평가액의 검토기준	242
15 분담이행방식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	244
16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이행 내용을 누락하고 입찰한 경우 공동계약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245



제1장

계약 일반

제1장 계약 일반

01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업체의 기술진단 수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857]
2018. 4. 19.

질의요지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의4] 제8호에 공공하수도 관리 등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위탁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대행해서 아니된다고 규정된 경우,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약취진단 용역」을 해당 시설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수행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지방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2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887]

2018. 4. 20.

질의요지

(주)□□ A지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주)□□ 본점으로부터 A지점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상법 제530조의5에 의한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대행용역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상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상대자의 허가·면허·신고 등의 권리와 의무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인 승계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관련 법령, 관련 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03

민간시설 임차계약 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6551]

2019. 11. 29.

질의요지

민간시설 임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시설 임차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민간시설 임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04

공사기간 연장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특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251]

2019. 10. 1.

질의요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또한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금액이 증액되어야 함으로,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발생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제6조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 지연배상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사에게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한다면, 지연배상금과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이중으로 배상할 여지가 있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당특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특약조항을 검토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지체는 관리책임의무가 있는 관리책임자(공사감독관, 감리, 건설사업관리단 등)의 관리미흡 등의 사유가 중첩되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책임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05

기술용역 경영상태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483]

2019. 7. 4.

제1장

계약 일반

질의요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입찰 공고에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입찰취소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3-가"에서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고,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개찰 이전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의 취소 또는 정정공고가 가능하나, 가격입찰이 완료되어 입찰공고의 취소 또는 정정공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공고문 작성 취지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06

사무용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산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677]

2018. 6. 1.

질의요지

한글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계약(계약기간 : 2017. 12. 1. ~ 2018. 11. 30.)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해지일자 : 2018. 4. 11.)된 경우, 이전 사용권 구매 계약이 2017. 11. 30.자로 만료되었으나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유로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 전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소급적용(계약기간 : 2017. 12. 1. ~ 2018. 11. 30.)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물품 계약의 성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이행기간”은 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어야 할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기간을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07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202]
2020. 10. 12.

제1장

계약 일반

질의요지

- 1) 「지방계약법」 제24조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의미
- 2) 물품구매·용역·공사가 혼재된 사업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에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 사업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의미함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제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순 물품구매·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며, 완성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08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1265]

2019. 3. 21.

질의요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해당 입찰에 부친 물품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입찰에 부칠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란 입찰에 부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에 거래하려는 품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09

1단계 사업자를 2단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제도과-2277]

2020. 5. 18.

질의요지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의 2단계 사업 발주 시 1단계 사업 계약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7조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조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등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1단계 사업 계약업체라는 이유로 2단계 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0

본점·지점의 업종등록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1031]

2017. 2. 27.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이 환경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인 입찰에 환경측정대행업을 지점에서 등록한 법인의 본점이 참가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본점의 대표자이므로,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업종 등록이 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지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할 사항임

11

본점·지점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87]

2020. 2. 12.

질의요지

- 1) 일반경쟁(전국) 입찰시 공고문에 '본점만 가능' 또는 '지점 참여 불가'라는 문구 미기재시 본점만 참여 가능한지, 지점도 참여 가능한지 여부
- 2) 일반경쟁(전국) 입찰시 수인의 동일 법인의 지점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법률행위능력을 갖춘 자연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대표권 행사 권한을 가짐)이 입찰자가 될 수 있으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이사과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서는 입찰무효사유로서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수인의 동일 법인의 지점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에 참여한 동일 법인의 지점에 대한 법인격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2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27]

2017. 4. 4.

질의요지

A도서관 건립공사(공사금액 88억 원)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예정업체는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따라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호에 따르면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하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의무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현장설명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함

13

개명 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140]

2017. 5. 1.

질의요지

입찰자가 입찰 전에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변경하였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개명 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한 것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라’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 전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14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

[회계제도과-104]

2017. 7. 31.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에서 1순위자가 적격심사까지 통과하였으나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개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무효 등 부적격에 해당하여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7-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자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

입찰(견적제출)자격 무효 여부

[회계제도과-2631]

2019. 5.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액수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의 법인명 및 소재지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하였으나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법인등기부는 변경등록 완료) 참가한 경우 견적서 제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사유이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2-라"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고,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하여는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5)"에서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는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6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성립 여부

[회계제도과-3686]

2020. 7. 2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는 다른 업종[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증을 제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해당 계약의 효력 및 계약유지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제4항에서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 계약담당자가 입찰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이 상당부분 진행된 계약의 효력 및 계약 유지 가능 여부는 계약 이행상황, 계약목적 달성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손해 발생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7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625]

2018. 11. 8.

질의요지

학교 공사는 학습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학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3조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부에서 통보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요령 통보(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6737, 2016. 12. 16.)」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 PC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임차, 복구·보수 사업, 기타 1월부터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경우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8

계약정보 공개 대상

[회계제도과-6437]

2018. 12. 20.

질의요지

2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발주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의 개정(2014. 2. 5.)으로 공개대상 수의계약금액 하한선이 폐지되어 모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19

입찰 시 특정규격·모델·상표 지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691]

2018. 4. 10.

질의요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입찰시 특정 규격·모델·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1)-7)”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이하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하도록 하였고,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서규정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학생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식재료 구매의 경우라면 특정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만,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품질·성능·조건 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수의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의 목적, 특징, 학교급식 정책운영방향, 학교운영위원회의 제품 선호도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20

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84]

2017. 8. 9.

질의요지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예산서 상에 몇 개의 지역을 묶어 용역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의 사유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라”에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구조물 및 단일용역으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용역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는 없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용역이라면 입찰 참가자의 수를 고려하여 분할·발주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설계서, 개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2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 위배 여부

[회계제도과-2638]

2019. 5. 28.

질의요지

학교 동일 건물내의 과학실 및 가사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할계약 금지조항에 위배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및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분할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분할계약 대상이 될 경우 가능하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분할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할계약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분할계약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사업계획, 설계서, 계약내용,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2

공사·용역이 혼재된 계약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504]

2019. 11. 27.

질의요지

사업내용이 용역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용역으로 통합발주 가능 여부

답변내용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10-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①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②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③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④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 목적물의 유형, 하자 책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3

공사 일부 공종 별도 분리 발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86]

2020. 2. 12.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전체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일부 공종(전기, 정보통신)의 시공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제2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전체 사업내용이 발주 이후에 확정되는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는 관련 법령인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

24

단가계약의 경우 원단위 절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29]

2019. 3. 8.

질의요지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원단위 이하 절사 후 투찰” 또는 “소수점 절사 후 투찰”의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마”에 따르면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가계약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 후 투찰” 또는 “소수점 절사 후 투찰”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투찰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25

광고료 등의 계약심사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2998]

2017. 12. 27.

질의요지

- 1)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약심사 대상 사업범위 중 용역에 해당되어 계약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용료 성격의 경비이므로 계약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에 따라 시·도는 추정금액 2억 원(시·군·구는 7천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동 예규 “3-나”에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계약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용역 해당 여부, 계약심사의 실익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참고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및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의 규정에 의거 홍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여야 하고, 광고비용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라면 계약심사의 실익 여부 등 계약심사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요령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목을 기준으로 계약심사 의무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26

재공고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회계제도과-4244]

2020. 8. 26.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또는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시·도 및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규모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 계약인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01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928]

2019. 11. 1.

질의요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2인 이상의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02

2인 견적 공고 시 견적서 제한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552]

2019. 7. 8.

질의요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수의계약에서 매일 배송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반품 및 긴급발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의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와 창고를 갖춘 업체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중복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3)-가)"에 따라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나-6)"의 각호의 실적, 규격, 재질·품질, 제조공장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1-나-7)"에서 "3)"의 각호와 "6)"의 각호의 사항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2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제한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창고 소재지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복하여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03

수의계약 시 특정인의 의미

[회계제도과-1085]

2019. 3. 12.

질의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특정인”의 의미 및 특정 업체의 유사 과제 개발경험이 “특정인의 품질·경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인”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도나 능력 등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설계용역 업무의 차별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유사과제 개발 경험을 보유한 특정한 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어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04

계약의 해지 후 해당계약 상대자와 다른 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55]

2019. 1. 9.

질의요지

문화회관 신축 관련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이 무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와 당초 계약의 해지 후 다른 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 계약목적물이 변경된 경우로서 당초 공모안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05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755]

2020. 7. 29.

질의요지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계약부서가 수의계약 적용판단과 무관하게 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속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나-3) 및 “4-라) 에서 사업부서에서는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 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별지 4>의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와 <별지5>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판단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계약 담당자가 유사 성능의 특허물품 존재여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와 자재선정심의위원회 결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06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09]

2020. 6. 19.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상 입찰인지 여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술용역 PQ 재공고의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07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금액

[회계제도과-3809]

2020. 8. 3.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 근거하여 1회 납품요구 구매 한도액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라면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08

사회적기업 등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여부

[회계제도과-5110]

2019. 9. 23.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으로서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09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540]

2020. 3. 3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호에 의한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 소독업 신고증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10

다른 법령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355]

2020. 3. 20.

질의요지

- ○○도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 ○○농식품유통진흥원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 학교급식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명시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해당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대상 등의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1

견적제출 후 계약 포기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954]

2018. 2. 23.

질의요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1~4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모두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지 새롭게 견적서 제출한 자로 결정할 지는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나, 2순위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12

작업상 혼잡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53]

2020. 3. 6.

질의요지

시공과정상 전차공사와 시간·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의 경우로서 금차공사와 전차공사의 발주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시, ○○공사)에도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서 정한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로 보아 전차공사의 시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가-2)” 및 “라” 에서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고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으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의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라도 작업상 혼잡 등을 이유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전차공사의 시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함

13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직접생산 확인 방법

[회계제도과-2682]

2020. 6. 8.

질의요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 농공단지 입주 A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와 직접생산가능 여부 확인 방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6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나-1)”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직접 생산 확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직접생산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직접생산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을 결정하여 확인할 수 있음

14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36]

2017. 1. 23.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시공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와 관련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써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인 공사라면 작업상의 혼잡 등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아니함

15

재난복구공사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적용범위

[회계제도과-3018]

2020. 6. 25.

질의요지

- 1) 기존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서 재난발생일 이후에 신규면허를 득하였을 경우 90일 범위 안에서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 재난발생일 이후에 재난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반사업자(법인, 개인)가 전문공사 신규 면허를 득하였을 시 90일 범위 안에서 제한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허가·면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 제2절 “2”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일로 판단토록 규정하고,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에서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요령 제3절 “1-나-5)-가)·나)”에서 안내공고일 전 해당지역 소재자를 지역사업자로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지역제한 하거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이 면허 등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한 면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견적서 안내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6

전자공개 수의계약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한

[회계제도과-1723]

2020. 4. 12.

질의요지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상 견적입찰 참가자격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개찰 당일 등록·발급받아 제출한 확인서가 유효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에서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을 준용하되,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도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17

2인 견적 수의계약 견적제출 자격 및 계약체결

[회계제도과-6094]

2020. 11. 26.

질의요지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대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을 함께 견적서 제출 대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와 견적서 제출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1순위자인 중기업인 여성기업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제1항제5호 ‘다·마’목 및 제3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여성기업은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⑧”에서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 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대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담당자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견적서 제출자로 제한한 경우라면 중기업인 여성기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8

특허통상실시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77]

2017. 9. 18.

질의요지

공사 발주 전 발주부서와 기술보유자(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내용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낙찰자(원도급자)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와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와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 기술보유자(기술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기술보유자의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의 허락을 얻어 일정범위에 한하여 여러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특허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시 통상실시권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특허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의 사용협약에 따라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자는 하도급을 포함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19

신기술 적용공사 제한입찰 방법

[회계제도과-499]

2017. 8. 23.

질의요지

계약심사 중인 응집지 및 침전지 방수·방식공사(사업비 282백만원)의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자문결과 미장·방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지역제한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의견으로 공사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공사의 일부가 아니고 주공정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가-4)”에서는 특허공법, 신기술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신기술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산정 시 점수가 9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 * 50억 원 미만 : 특허·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90점 이상
 - 50억 원 이상 : 특허·신기술 적용부분이 92.86%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95점 이상
- 질의의 경우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 특허·신기술의적용부분이 85.72% 이상 및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산정에 따른 점수가 90점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에 따라 해당 공사에 특허·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신기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 실시권자는 제외)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20

지역제한 시 인접 시·도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1250]

2018. 3. 15.

질의요지

종자생산업체 2곳의 피허가자 명칭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영항아래 두 개의 업체가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제한 입찰시 군 관내로 제한해야 하는지 또는 1인으로 인정하여 인접 시·도를 포함한 입찰 및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서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입찰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 일반입찰에 부칠지 아니면 인접 시·도를 포함한 지역제한 입찰에 부칠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규모, 업체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1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89]

2019. 3. 13.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계약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일부 제조사에서 낙찰자에게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라-2)”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낙찰 이후 이를 실제 이행하는 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이므로 실질적인 협약은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낙찰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그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나-21)”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체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는 낙찰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낙찰자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 물품공급·기술지원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협약변경 또는 분리발주 등을 검토하여야 함

22

지명입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788]

2020. 6. 12.

질의요지

상이한 맨홀보수 신기술을 단독으로 보유한 업체가 3개, 공동으로 보유한 업체가 5개인 경우(공동업체 8개) 맨홀 보수에 적용할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호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 10인 이내로 보아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 상 지명경쟁입찰은 맨홀 보수에 적용할 특수한 기술이 확정된 후 해당기술을 가진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맨홀 보수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한 기술이 확정되기 전 상이한 신기술 보유업체가 10개 이내라는 이유로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맨홀 보수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23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055]

2019. 6. 1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종합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명시된 “종합계약 표준협정서”를 대표기관 집행방식으로 작성하되, 대가 지급을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가”에서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종합계약 표준협정서의 경우 계약집행의 효율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만든 표준안이므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종합계약을 하는 각 관련기관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협정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4

종합계약 운영요령 상 동일장소 의미

[회계제도과-4342]

2020. 8. 31.

질의요지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 및 ○○도 시·군을 '동일장소'로 보아 ○○도와 ○○도 시·군이 공동으로 종합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3-가”에서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합계약의 '동일 장소'는 발주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이 이행되는 현장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도 및 ○○도 시·군이 해당 계약의 목적·내용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0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인지 여부

[회계제도과-910]
2018. 2. 22.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이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가격정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업체가 입력하는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가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02

발주기관의 승인통보 형식

[회계제도과-2316]

2018. 5. 15.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울러 같은 예규 제13장 제2절 제3호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쌍방의 의사표시(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지시 등)는 문서로서 행해져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03

외주 가공비의 비목

[회계제도과-4343]

2020. 8. 31.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투입되는 자재의 특허업체가 타 공장에 외주제작을 의뢰하여 납품할 경우 예정가격의 비목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관 "6-가 및 다-13"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고, 경비의 세비목 중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계약목적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라면 가공에 소요되는 비목의 분류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하도급자가 타 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은 자재로 시공하는 경우라면 외주가공비인 경비로 반영하여야 함

04

계약심사 심사대상 기준 추정금액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6326]

2019. 11. 20.

질의요지

계약심사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추정금액” 정의 중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및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 “추정금액” 이란 공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정금액은 도급자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05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법

[회계제도과-5679]

2018. 11. 12.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잔토처리와 관련한 운반비, 기계경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6-다-2) 및 6-다-3)"에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며,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와 기계경비는 위 규정에 따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06

업자(생산자) 공표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985]

2018. 11. 29.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정보지」의 '업자(생산자) 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견적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실례가격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정보지」의 '업자(생산자)공표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아니라, 업자(생산자) 판매 희망가격 또는 업자(생산자)가 발표한 가격인 경우라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07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회계제도과-1293]

2020. 3. 18.

질의요지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도 물품·공사가 혼재한 계약으로 보아 예정가격 산정 시 보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10-나'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 및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예정가격 산정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08

산림조합과 사방사업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회신

[회계제도과-4533]

2018. 9. 18.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산림조합이 다른 사업자로 부터 재료비 및 기계경비 등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합산 후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대금지급 시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서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절 "5-나"에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원재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09

산출내역서 오기에 따른 입찰무효

[회계제도과-3648]

2018. 7. 27.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연구용역 입찰에서 가격입찰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로 전자투찰하고, 별도로 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입찰자(면세사업자)가 작성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부가가치세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다-3'에 따르면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였으나,
 - 해당 입찰자(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기재 하였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므로 입찰서의 오기로 볼 수 있음
- 다만, 발주처에 제출되는 산출내역서는 해당 용역에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물량과 비용 등을 입찰자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지출되지 않을 부가가치세를 산출내역서에 기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가격제안서에는 입찰공고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면 입찰 무효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입찰공고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10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관련 질의 회신

[회계제도과-57]

2018. 1. 4.

질의요지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서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범위에는 재료비 외에 경비 등(운반비, 기계경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사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을 경우(당초 입찰 공고 시 부가가치세 면제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에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 면제 및 원재료 매입세액 합산) 변경계약 또는 준공시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서 '비목별' 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상 세부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목인 경우라면, 재료비 또는 경비 구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4-라' 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 동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3'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1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 및 새로운 입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08]

2020. 6. 19.

질의요지

- 1)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 결정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개찰된 상황에서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 2) 개찰 이후 예정가격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입찰가격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한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개찰 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3-가"에서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에 관한 착오·오류 등으로 인한 입찰 취소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찰이 완료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조달청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12

운반비의 예정가격 작성 비목

[회계제도과-3364]

2018. 7. 10.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토사 운반비를 계산할 때에 토사 운반비를 경비로 보아 일괄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 비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4-다'에서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되,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작성요령 제3관 '6-다-2)'에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료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부대비용이 아닌 운반비는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3

위탁 수수료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710]

2020. 2. 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상 위탁 수수료의 인정 범위는?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는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개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상 위탁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목적과 취지, 범위 등을 감안하여 위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14

단가계약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금액의 범위

[회계제도과-4934]

2018. 10.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사후정산의 기준금액은 원가산정 시 책정한 총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가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실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에 따라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르면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계약상대자의 지급청구 시 해당보험료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가에 보험료가 반영된 경우라면 단가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

학술연구용역 원가(인건비) 산정기준

[회계제도과-110]

2018. 1. 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함에 있어 책임연구원이 용역 참여율이 20%인 경우 인건비를 기준단가에 2/5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단가에 0.2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주1)에 따르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책임연구원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참여율이란 실제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연구원의 용역참여율이 20%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기준단가에 2/5를 적용해야 함

16

준공대가 지급 후 학술용역 경비 사후정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501]

2019. 7. 4.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학술용역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명시된 수질분석 등을 일부 미 실시되어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한 후 준공처리 및 대가지급을 완료한 경우
 - 계약서류 등에 사후정산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과업내용서에 따른 계약이행은 완료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미 이행된 일부항목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은 타당한지 및 감액 정산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형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확정계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개산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원가조건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과업 내용 변경 없이 일부항목을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사", "2-다", "3-다"에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기한은 준공대가 지급 이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 지급 후 감액정산분의 청구 및 지급가능 여부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7

학술용역의 책임연구원의 자격

[회계제도과-527]

2017. 8. 24.

질의요지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실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책임연구원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4관- 1-나”에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대학 부교수 수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학술용역계약에서 책임연구원의 적격자는 계약담당자가 대학 부교수 재직 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성 등 용역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계약담당자가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4장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낙찰자 결정 기준

01

신규청년고용수 평가 방법

[회계제도과-382]
2020. 1.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평가기준 3.신인도 주1)-차)-(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의 의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평가기준 3.신인도 주1)-차)-(3)에서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6개월 전 입사한 자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청년고용수(입찰 공고일 중도퇴사자 제외)를 의미함

02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시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적용기준

[회계제도과-5339]

2018. 10. 29.

질의요지

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의 신인도 중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와 관련하여, 4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내역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신인도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물품구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주) 1-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과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비교 산정하여 해당업체의 신규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용인원은 <별표1> "3" 신인도 "주1) -사) -(1)"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4대보험 증빙서류, 급여지급 등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신인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3

물품 적격심사의 평가시 납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회계제도과-3556]

2020. 7. 20.

질의요지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물품규격서와 상이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규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필요로 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절 "1-4"에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한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선순위 낙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로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선순위 낙찰자가 입찰 후 계약체결 이행 전에 파산·해산·법정관리·워크아웃된 경우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 계약체결 이후 물품규격서와 상이한 규격의 물품 납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1순위업체를 낙찰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04

입찰공고일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068]

2020. 9. 29.

질의요지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가 적격심사서류로서 유효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다. 경영상태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기간계산은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은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입찰공고일 당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는 적격심사서류로서 유효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05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 등급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405]
2020. 10. 21.

질의요지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 시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유효한 평가자료로 보아 적격심사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다. 경영상태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전에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유효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06

물품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의 의미

[회계제도과-1055]

2020. 3. 6.

질의요지

-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 동일 가격 입찰 시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이행능력'의 의미
 - 적격심사의 심사분야 중 하나인 '물품 납품이행능력'인지, 아니면 적격심사의 '종합평점' 인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절 "2"에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 동일 가격 입찰 시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가장 높은 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이행능력'은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을 의미함

07

물품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고용기간 연속 여부

[회계제도과-2497]

2017. 7. 5.

질의요지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보유한 기술인력의 근무(고용)이력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된 기술인력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입찰공고일 : '17. 6. 14.)

근무(고용) 업체	근무(고용) 기간	비고
A사(적격심사 대상업체)	'17. 6. 1. ~ 현재	2일 공백
B사	'17. 3. 3. ~ '17. 5. 31.	
A사(적격심사 대상업체)	'15. 9. 3. ~ '17. 2. 28.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1-나-주2) 및 주3)”에 따르면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함)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인력이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의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고용)기간이 연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08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규정의 국제입찰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584]

2018. 2.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의 신인도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고도인증 및 녹색·일반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국제입찰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신인도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고도인증 및 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주1)-가)”의 단서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제입찰의 경우는 신인도의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싱글 PPM인증)”, “C(KS·CE·UL·해당국 국가산업 표준규격 인증)”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 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주5)”에 규정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 평가없이 “주5)”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09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시
감사보고서 적용 기준**

[회계제도과-2678]

2019. 5.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의 입찰에 있어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어느 시점의 감사보고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에서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②-나-2)’에서 외감법 적용을 받은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하고,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절에서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 에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의견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감사보고서를 적용함

10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시
소수점 처리**

[회계제도과-283]
2017. 3. 15.

질의요지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 평가 시 소수점 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2-가”에 따르면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 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최종평가점수에 조달청 배점기준 대비 행정자치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른 공사규모별 배점을 곱하여 환산 평가하고, 환산 평가 결과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1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
평가 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 산정 방법 질의**

[회계제도과-425]
2018. 1. 23.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③-다-주4)’ 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 평가 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의 각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하는지 구성원별 각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 후 평점을 산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③-다-주4)’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의 각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야 함

12

하도급 변경에 있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의미

[회계제도과-6818]

2019. 12. 12.

질의요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수급예정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업체” 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및 하수급예정자의 단순 계약 포기 시 하수급자 변경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향후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인 하도급 비율,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따라 차등평가토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 에서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되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이란 당초 하도급관리 계획서상의 하도급 내용과 비율 등을 유지하되, 당초 기존 하수급인 보다 시공능력, 시공기술, 시공실적 등이 기존 하수급인 보다 우월한 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변경하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3

하도급 추가 및 승인 여부

[회계제도과-543]

2018. 1. 30.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제출한 공사의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공종이외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가'에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5-다'에는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동 규정 <별표 6>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서류로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이 없이 하수급자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4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판단 기준

[회계제도과-1294]

2020. 3. 18.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10>에 따른 재난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 포함) 건수 판단 시 해당일자 기준시점에 시공 중인 공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등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부담이 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다-2'에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0점에서 0.5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과 관련한 시공여유율은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현재(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 포함) 관급으로 계약 또는 낙찰된 공사가 없거나 적어 금번 공사의 시공에 여유가 있는 입찰자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제도로, 이 경우 관급공사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공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수에 포함됨

15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1823]

2020. 4. 20.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에 적용하는 신인도 평가 중 '최근 1년 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14' 에서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에 대해 조기 단축기간별로 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행위가 있었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서류라면, 이 확인서의 발급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라도 조기단축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

**신인도 평가 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서
해당지역의 범위**

[회계제도과-2710]

2020. 6. 9.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기준 중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과 관련하여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광역시·도”)에 소재한 업체가 신인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주13’에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대해 평가함에 있어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7

신인도 평가 시 영업정지처분의 배점 적용 기간

[회계제도과-5214]

2019. 9. 30.

질의요지

A건설업체가 B구청으로부터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2>에 따른 신인도 평가기준 중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서 신인도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행정처분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기간(영업정지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2>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중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2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영업정지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됨

18

신인도 평가 시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

[회계제도과-157]

2020. 1. 13.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0'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에 대해 신인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위 조항에서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4> '10'에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최초 지원금 기준'의 의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요건을 검토 받아 지원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의미임

19

신설 업체의 재무비율 평가 시 관련 협회 정기결산서 자료의 통보시점

[회계제도과-4801]

2020. 9. 18.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5일 신설한 업체의 재무비율 평가시 관련협회가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입찰공고일 이후에 조달청으로 통보한 경우 관련협회의 자료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결산서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 2019년도 업종 평균비율 적용일자('20. 7. 1.) / 입찰공고일('20. 7. 20.) / 협회통보일('20. 7.24.)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II' 및 <별표3-1> '주1)-가)'에서 재무비율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는 협회 자료)로 평가하고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비율은 해당 업체가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하여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가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주기관(조달청)에 통보된 경우라도 관련협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20

**공개된 명단에서 임금체불 위반 확인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신인도 평가방법**

[회계제도과-1014]
2017. 2. 24.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임금체불 위반업체 평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일(2016. 12. 28.)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연도(2013년, 2014년, 2015년)에 공개된 위반 건수를 확인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3년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심사 절차 및 조치 방법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주10)”에 따르면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연도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과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3년도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연도의 위반 건수로 신인도를 평가하여야 함

21

신인도 평가 시 평가요소의 기준일

[회계제도과-90]

2017. 3. 6.

질의요지

2017. 1. 12. 입찰 공고한 □□개선공사(추정가격 약 149억 원, 2. 22. 개찰)의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17년 고용탄력성 등급 자료를 2017. 2. 16.에 발표 게시함에 따라 최근 2년간(2016 ~ 201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탄력성 등급자료’ 중 어떤 자료를 이번 입찰공고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 따르면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현재 발표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

시설공사 적격심사 접근성 점수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3555]

2019. 7. 8.

질의요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에 따른 접근성 평가와 관련하여 □□광역시 내 자치구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접근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지5> “1-라-3)”에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하나,
 - “1-라-2)”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시·군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접근성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므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3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하도급 실적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496]

2017. 7. 5.

질의요지

원도급업체가 동일업종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을 원도급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4-나’에 따르면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 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과거에 직접 시공하여 준공한 실적을 각각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업종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의 유도로 전문건설업의 활성화와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는 전체실적을 인정하도록 함
 -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전문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방법과 같이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실제시공한 부분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2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산정 방법**

[회계제도과-3741]

2020. 7. 29.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 중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와 관련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 7. 1.’ 부터 산정하여 최근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에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주8’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최근 1년전이나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을 적용함

25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적용 범위

[회계제도과-6812]

2019. 12. 12.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 참가한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의 등록을 보유한 경우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시 보유업종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 참가한 해당공사 업종만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1'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부기준 <별지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참가자의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공사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함

26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263]

2019. 3. 21.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였으나, 적격통과점수 미달이 된 상황에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로 보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하여 적격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1-1'에서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예규 제2장 제4절 '7'에서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토록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위 조항에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은 제출된 서류자체의 미비, 오류에 한하여 보완토록 하는 의미이므로 적격심사대상자가 당초 선택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변경토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27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의미

[회계제도과-1219]

2019. 3. 19.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1'신용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1'에서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의미함

28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공경험 평가 실적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692]

2019. 5. 30.

질의요지

추정가격 3.9억원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실적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회에서 확정·발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의 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3-나”에서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세부평가방법은 <별표1> “II”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고,
 - <별표 1> “II-1-가”에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2018년 시공실적 발표 전 공고한 입찰의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실적으로 평가함

29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민간실적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2409]

2019. 5. 1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의 민간실적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준공 완료된 공사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준공필증”을 필수로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4-가-1”에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준공실적을 “Ⅲ-1-가”에서 일부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적평가 시 “1-4-가-5”에서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실적증명 발급기관이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민간실적의 경우는 동 <별표 1>의 “1-3-가”에서 시공실적증명서에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주3)에서도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적평가지 준공 여부에 관한 사항이 명확치 않아 발주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 제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등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입증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0

**관련법령에 별도 인·허가 사항이 없는 시설공사의
실적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26]
2018. 1. 23.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가'에 따르면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령에 따른 별도 인·허가 절차가 없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가'에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허가서류, 준공 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면세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공경험 평가는 정상적인 이행경험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서류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시 최근 5년의 판단 기준

[회계제도과-2011]

2018. 4. 27.

질의요지

도로개설공사 관련 최근 5년간 실적평가에 있어 실적증명을 2013~2016까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실적증명서를 받고, 2017년 실적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II-1-가’에 따르면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협회가 있으나 업체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동 세부기준 <별표 2> ‘II-2-가’에 따라 위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는 연도별(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된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여야 함
 - 참고로, 2017년 시공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협회가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2 ~ 2016년의 실적이 최근 5년간 실적에 해당 됨

32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의 이행자격이 변경됐을 시 시공실적 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949]

2020. 4. 24.

질의요지

종전에는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998호)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만이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 재공사업 면허로 이행한 병해충 방제 용역실적을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7)-나)에서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면허)업종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실적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면허 등이 변경된 사안에서 해당 공사의 시공당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면허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세부 이행내용이 금번 발주사업과 동일한 경우라면 준공한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문, 과업내용과 이행실적의 동일성 여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3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으로 물품과 시공비 합산 실적의 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130]

2017. 6. 21.

질의요지

A사에서 2017. 05. 04. 입찰공고한 「□□수영장 차양막 보강공사」 입찰공고문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시 실적 인정범위를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으로 평가(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00%)한다고 명기하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적격심사 대상업체에서는 공사실적증명서에 물품대와 시공비를 합하여 '납품 및 시공액'으로 제출하고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물품과 시공비 합산실적을 인정(혹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Ⅲ-1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인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 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의 책임은 "Ⅱ-1-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사계약과 물품계약은 적용법령과 계약 이행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르므로 공사 계약에 따른 자재 등의 납품·설치를 물품실적으로 사용하거나 물품계약에 따른 자재 등의 납품·설치를 공사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이행경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34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기준 및 경영상태 평가 방법 질의**

[회계제도과-629]

2017. 4. 4.

질의요지

- 1) 석면해체·제거업의 경우 실적을 관리하는 관련협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인정 여부
- 2) 석면해체·제거업은 공사업종이 아닌 용역업종(조달청 코드번호 5652)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위의 평가방법과 별개로 경영상태 평가에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3> ‘Ⅲ-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신용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 ‘Ⅲ-9’에 등재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업종 관련협회가 아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과-2168(2016. 7. 19.)호에 따라 “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경영상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 “Ⅰ-1”의 단서에 따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해당업종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세부기준 <별표 3-1> ‘주1)-가)’에 따라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5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5830]

2020. 11. 11.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2018년도 실적 중 일부를 누락하여 관련협회에 신고하고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Ⅱ’에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 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공사실적 인정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 중 1회계연도 내의(2018년도) 실적에 일부 누락신고분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6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임·귀속한 용역실적의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682]

2017. 2. 7.

질의요지

“해당 국립대학교의 연구소(별도 사업자등록)가 수행한 실적은 산학협력단에 위임·귀속한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해당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별도 사업자등록)이 용역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 용역실적의 인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역의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입찰공고문의 용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준공 완료한 용역 실적을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37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 부여방법

[회계제도과-438]

2017. 3. 24.

질의요지

○○시에서 발주한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업종별비율)은 공공측량업(3.11%), 수치지도제작업(6.93%), 지하시설물측량업(89.96%)이고, ○○시 소재 지역 업체는 공공측량업이 10개 이상, 수치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기술용역 입찰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A공동수급체(△△업체 30%, □□업체 70%)와 B공동수급체 (△△업체 35%, ◇◇업체 65%)의 지역 업체참여도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 “주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세부기준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의 “1-가”에 따라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광역시 소재 지역 업체가 10인에 미달하는 수치지도제작업(6.93%), 지하시설물측량업(89.96%)에 대해서만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지역 업체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38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범위

[회계제도과-447]

2017. 3. 24.

질의요지

△△광역시에서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을 부치는 경우에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내용 중 “인접 시·도”의 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세부기준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의 “1-가”에 따라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인접 시·도”는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하므로 행정구역상 △△광역시와 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39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인정 여부

[회계제도과-3296]

2018. 7. 6.

질의요지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적격심사대상업체 입사일이 입찰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책임연구원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입사일로 기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및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4대 보험 등이 미신고 된 경우 책임연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서 각 평가요소의 판단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의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입찰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책임연구원을 평가하며, 책임연구원의 재직여부는 실제 입·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재직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40

기술용역 적격심사 관련 재무제표 적용연도

[회계제도과-270]

2019. 1. 17.

질의요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시 입찰공고문(2018. 10. 8. 공고)에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후 2016년도 한국은행 자료를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심사대상자의 2016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해야 하는지 또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재무제표인 2017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나-1)”에서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같은 <별지> “2-나-3)”에서 최근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최근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 기준비율과 업체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이 2016년도 자료인 경우 평가대상 업체 정기결산서도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1

**물품 또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040]

2017. 4. 24.

질의요지

지자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위 규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42

제안서평가위원회 선정 시 입찰참가자의 추첨횟수

[회계제도과-2683]

2020. 6. 8.

질의요지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의 의미는 한 차례 추첨만을 의미 또는 두 차례 이상 추첨해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와 두 차례 추첨하여 다득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해당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 다른 시·도 위원들의 비율, 예비명부작성 및 추첨을 통한 위원선정 방법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 제4절 '1-바'에서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추첨하는 횟수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심사위원 추첨 결과, 다른 시·도 심사위원 비율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4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회계제도과-4245]

2020. 8. 26.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조례나 규칙이 필요한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11항에서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 다른 시·도 위원의 비율, 예비명부작성 및 추첨을 통한 위원선정 방법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소관부처(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4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회계제도과-2425]
2017. 11. 2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위원회 구성원에 계약 당사자인 당해 지자체 공무원은 배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나' 및 '1-바'의 규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구성하여야 함

45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관련 입찰기준일

[회계제도과-1312]

2017. 5.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제안응모신청서(청렴서약서, 공동수급협정서, 회사 일반현황 등) 접수일과 제안서(입찰참가 신청서, 기술·가격 제안서 등) 접수일을 각각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 제안응모신청서 제출을 입찰서 제출로 보아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의 성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입찰참가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은 입찰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성립됨
-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3”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가격제안서(입찰서)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도착일시 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무효임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제안응모신청서 접수일과 제안서 접수일을 달리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가격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제안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문의

내용, 제안응모신청서 접수일 및 제안서 접수일을 달리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46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기한

[회계제도과-7110]

2019. 12. 27.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3-나”에서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절 “4-사-6)”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순위를 발표해야 하나,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동시에 제출 가능할 것이며,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7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469]

2019. 5. 21.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1-가"에서 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의 기준과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고, "5-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5장

계약 일반조건

제5장 계약 일반조건

01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차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066]
2017. 12. 29.

질의요지

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 중 발주처 사정으로 최종 차수계약을 하지 않고 장기간(약 8년) 중단된 상태에서,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계획 진행으로 당초 장기계속공사의 최종 차수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어 발주처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유로 최종 차수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목적,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02

소송 중 새로운 계약의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614]

2019. 10. 22.

질의요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한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중에도 새로운 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제1항제5호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5), 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사유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의거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입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새로운 입찰 등에 부칠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목적·특성, 소송의 진행상황, 관련법령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03

공사 지연업체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650]

2018. 9. 27.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 후 준공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경영악화(압류)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직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7)”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을 수차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에서 계약 내용·조건, 현장상황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04

공사 계약해지 시 위약금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393]

2018. 12. 18.

질의요지

교육지원청에서 체결한 <석면제거 및 천장설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가”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같은 절 “3-다, 라”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에게 계약 해제·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 해제·해지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4-다”에 따라 미지급 기성대가와 투입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 지급, 합의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05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887]

2019. 2. 26.

질의요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진행 없이 정지 상태이며 예산은 사고이월 후 불용처리가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가”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같은 절 “3-다, 라”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과 하수급자에게 계약 해제·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 해제·해지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4-다”에 따라 미지급 기성대가와 투입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예산 불용 및 민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특성, 현장상황, 사업진행 가능 여부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06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10]

2020. 6. 19.

질의요지

계약상대방이 착수계 제출 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참여연구원이 아닌자를 참여 연구원으로 사칭하여 과업 수행회의에 참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10)에서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허위 증명서 발급, 참여연구원 사칭 등을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로 보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공고문, 계약문서, 관련법령 및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07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공기산정 기준

[회계제도과-1571]

2017. 5. 25.

질의요지

-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현재 계약된 기간이 1,100일(당초 304일 + 설계변경 261일 + 공사정지 535일)이고, 이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공사정지기간이 535일이므로 실제공사기간은 565일에 해당되는데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바, 이 경우 공기는 공사정지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공사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5-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제6절 “1”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같은 절 “6.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경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6”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는 공사정지기간을 제외한 실제공사기간(당초 계약 시의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08

거짓실적증명서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6476]

2020. 12. 17.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입찰과정에서 거짓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3호에서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3"에서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토록 한 규정은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계약상대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인 경우라면 해당 거짓 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함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당해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09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주체

[회계제도과-4559]

2019. 8. 28.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는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0

**계약상대자가 경영난으로 계약 포기 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201]

2017. 5. 4.

질의요지

-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을 장기계약('15년 ~ '17년, 연간 1,711백만원)으로 체결하여 '15년과 '16년을 이행하고 내부사정(경영난)으로 '17년 계약을 포기했으나 사업부서 요구로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3개월 더 용역 이행을 하고 '17. 4월에 사업부서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계약기간이 3년인 차수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16년까지 완료하고 '16. 12월말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사유로 '17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개월을 이행한 후 '17. 4. 1.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경영난)으로 인한 계약 포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11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여부

[회계제도과-5986]

2018. 11. 29.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이상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나,
 -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2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계약기간 연장 시 지체일수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2900]

2019. 6. 10.

질의요지

환경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의 규정에 따라 태풍·홍수·폭염, 그밖에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함
-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 납부를 위한 금액·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상황, 미세먼지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3

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 일수 산정

[회계제도과-633]

2018. 2. 6.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일부 미시공된 상태(협문 미설치)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지시를 받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 일수 산정 방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바-1)"에 따르면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결과 해당 공사목적물의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어 발주기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한 후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함

14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산정 기준

[회계제도과-185]

2019. 1.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 시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변경 작성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정산된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 시 변경되거나 사후 정산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10절 “2-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장 제4절 “1”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변경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15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를 사유로 2차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748]

2020. 11. 6.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된 1차 공사계약분의 하자를 사유로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2차수 공사계약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은 각 연차별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1차수 공사계약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준공된 1차수 공사계약의 하자를 사유로 2차수 공사계약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16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시 기납 부분 인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2]

2017. 3. 6.

질의요지

일괄납품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물품 일부가 발주기관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물품 전체를 반려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에 통과한 잔여 물품을 발주기관에 단순 보관한 것을 물품의 기납 부분으로 보아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일괄납품 조건으로 납품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보관만 한 경우라면 그 일부에 대하여 검사 및 인수(또는 관리·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지연배상금 계산 시 물품의 기납 부분으로 보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17

하자 검사 비용부담의 주체 등 하자 검사 관련

[회계제도과-263]

2018. 1. 15.

질의요지

- 1)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 후 관리청으로 이관시킨 시설물의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하자검사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질의
- 2)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할 때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 3)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하자검사 비용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사업 준공 후 시설물을 이관한 경우 하자검사에 따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과 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취지, 시설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호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에 하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라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3) 관련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하자 검사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계약법령상 하자 검사의 비용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 검사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18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해당 여부 및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251]

2020. 5. 15.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용역 수행 곤란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손해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 손해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가” 및 “8-나”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등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보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8-다” 및 “8-라”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8-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서 정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업수행이 없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개학·개관 등이 연기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행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 및 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 계약내용, 해당 지출예산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여부, 동일손해 관련 보전금액의 이중수령 여부, 관련 법령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9

공사정지 시 적용 대출금리

[회계제도과-4345]

2020. 8. 31.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 산출 시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지정금고에서 발주기관이 대출받을 경우의 금리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대출받을 경우의 금리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라'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대출받는 주체의 신용도와 대출기관에 따라 적용금리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있어 해당금액 산정의 객관성,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의미함

20

입찰 시 정한 특수조건의 인정 여부 및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821]

2018. 8. 9.

질의요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 시 교육청 지침 등에 의거하여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특수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절 '1-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품계약 특수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계약당사자간 협의 없이 발주처에서 임의로 특정상표, 사양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물품계약 특수조건 등)을 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객관성이 확보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당계약의 해지 및 해당 계약과 관련한 부적정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01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회계제도과-2408]
2019. 5. 1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통학차량 임차용역계약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 시 해당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2-다-2)”에서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 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용근로자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는 확인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02

책임감리 용역비 기성금 정산 비율

[회계제도과-1365]

2017. 10. 11.

질의요지

- 선박건조책임감리업체(○○엔지니어링)는 □□시-시공업체간 타절정산이 완료되자, 책임감리 대가 지급을 계약 공수(工數)의 77. 1%를 우선 신청하고 나머지는 제3업체 선정 후 감리 투입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신청한다는 책임감리업체의 의견에 대해 책임감리용역이 성질상 선박건조공사의 진척 정도와 독립된 용역으로 보아 용역비 분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감리용역비 지급 시 공사 공정률(43. 5%)과 감리 공정률(77. 1%) 중 어느 것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공사와 책임감리용역은 별도의 계약으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책임감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공사의 진척 정도와 비례하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책임감리용역의 기성비 산정은 용역공정예정표 등 산출내역을 기초로 부진시공에 대한 책임감리수행의 적정성, 책임감리 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입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입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03

사고이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계약 유지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

[회계제도과-2403]

2017. 6. 19.

질의요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 용역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비가 2017년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는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처리를 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지 못해 불용처리 한 경우는 발주기관 내부적인 사안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불용되어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되,
 - 대가 청구일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대가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함께 지급하여야 함

04

선금 반환 청구 시 하도급 대가와 기성대가
미지급액 상계 순서

[회계제도과-6918]

2019. 12. 1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 원·하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작성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원도급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근거로 하도급사의 잔여 기성대가를 선금 총당에 앞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나-1)'에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절 '5-나-3)'에서 선금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총당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금은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가 가능할 것이나, 최종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자 선금 배분 여부, 기성부분의 하도급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판례, 보증서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05

선금사용 정산 시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3890]

2019. 7. 24.

질의요지

2개 회사가 참여한 공동이행방식에서 선금을 지분율대로 신청한 후 자재비 등 선금사용 사유 발생 시 원가안분을 통해 공동사에서 대표사에 지분율만큼 선금을 입금하고 대표사에서 한꺼번에 선금을 사용한 경우 공동사에서 대표사로 지출(입금)한 내역이 선금사용내역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자 부과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어 선금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선금사용내역서도 각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06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085]

2019. 4. 30.

질의요지

계약을 체결한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경우, 이월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서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선금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가”에서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에는 선금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예규 같은 장 “3-라”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회계연도 마감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7

계약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987]
2020. 6. 24.

질의요지

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의 기성부분을 일부 인정하여 준공검사 후 기성을 일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라"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함

08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582]

2017. 12. 0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규정을 '용역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위 조항을 명시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 시 갖추어야 할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용역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체불임금을 발주기관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조건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함
 - 다만,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은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상에 명시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09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76]
2017. 9. 18.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할 준공대가에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의무가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10

공동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회계제도과-4045]

2018. 8. 23.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 집행 중 주계약자 중도탈퇴 및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 후 계약이행 중 지연배상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의 주요 책임이 있는 前주계약자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및 계약 보증금 세입조치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지체를 야기시키고 중도탈퇴한 구성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는 공사준공 이전에 해당 구성원이 탈퇴하였더라도 준공지연을 야기시킨 책임이 해당 구성원에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함
 -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교체를 통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는 어려울 것임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0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406]
2019. 7. 2.

질의요지

- 1)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된 궤도공사에서 레일 투입으로 발주기관이 토목공사의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부분만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또는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
- 2) 관급자재 계약업체와 시공위치까지 도착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관급자재를 별도의 장비를 활용하여 운반해야 함에도 별도 장비운용 비용이 누락된 경우와 임시설비의 철거공사 공종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및 발파공사로 인한 발파암 운반 물량이 기존 설계서 보다 증가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1-다”의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전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관급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 장비 투입, 철거 공사의 물량내역서 누락 및 발파암 운반수량 증가로 인하여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상황,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0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3966]

2019. 7. 2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타 공정 연계 시공 필요로 인한 지연 및 관급자재 설치 전 종합시운전(내역에 포함) 이행 불가로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할 수 없어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간접노무비 반영 및 원도급자는 별도의 시공이 없으나, 하도급자의 종합시운전에 따른 간접노무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2-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가’부터 ‘2-라’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1-다”의 불가항력의 사유,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집행기준 제8절 '2'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계약이 지연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타 공정 연계 시공 필요로 인한 지연 및 관급자재 설치 전 종합 시운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근거자료 제시, 계약문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의 산정 방법

[회계제도과-968]
2017. 2. 22.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 발생 시 간접노무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04

개산급 사유서 없이 기 수령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2075]

2017. 6. 20.

질의요지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개산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미 수령한 기성액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함)」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5-가”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같은 절 “5-나”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고,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 되었어야 할 부분과 지연부분, 개산급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한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계약금액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05

국민체육센터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81]

2017. 3. 15.

질의요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3층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제한 범위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당초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므로,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가되는 부분을 시공할 수 있는 추가공사의 경우는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당초 설계상황 및 설계내용, 입찰 및 계약 상황, 변경대상 및 내용, 관련법령·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06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186]

2019. 1. 11.

질의요지

공사 정지로 인하여 건설장비의 유휴비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바’에 따른 유휴 장비비 산정시 임대장비와 보유장비의 구분 방법 및 하도급자가 보유한 장비를 보유장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바’에서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보유장비의 경우에는 유휴 장비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반영해주는 제도이므로, 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유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장비의 해당여부는 발주처에서 계약문서,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07

계약금액 조정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259]

2020. 1. 17.

질의요지

토사 처리물량(26,345m³)에 대한 토사 운반거리가 누락되어 발주된 공사입찰에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행 후(임의 이행물량 19,424m³)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적합한 절차 이행이 선행되지 않아 계약내용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운반거리에 대한 기성대가를 받아간 이후 임의로 이행한 운반거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3’에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등 같은 절 ‘3-가’의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같은 절

‘3-나’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반거리의 변경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어 우선 이행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완료 이전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기이행한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계약문서(계약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 설계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08

물가변동 금액 산정 기준 공정표

[회계제도과-3520]

2018. 7. 18.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정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착공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최초계약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항에서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정이 지연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예정공정표가 변경승인이 된 경우라면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현장상황, 계약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09

준공금 지급 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501]

2019. 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대가 지급 전에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받았으나, 예산부족과 공사량 조정 불가로 준공 시에 물가변동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계약상대자는 지속적으로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금 지급이후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다"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가격기준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1003]

2017. 2. 23.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입찰당시가격 산정기준과 물가변동시점의 기준이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동일가격기준 적용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에 대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방법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없어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다른 거래실례가격 등)을 동일하게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공사내역, 거래실례가격 등 조사·발표 내용, 가격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적용하는 사항임

11

수량산출서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78]

2020. 1. 7.

질의요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규정한 설계서인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제6절 ‘1-가’의 설계서의 누락·오류, 현장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 적용,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수량산출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나, 수량산출서가 변경되는지 아니면 설계서가 변경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근거자료 제시, 사실관계, 현장상황, 계약 문서(설계서 포함)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2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방법

[회계제도과-2759]

2020. 6. 11.

질의요지

입찰참가자에 의한 설계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적격심사로 발주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총액입찰(입찰시 입찰금액만 제출)과 내역입찰(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각각의 단가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에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이하 “협의단가”)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입찰참가자가 변경할 수 없는 적격심사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총액입찰 또는 내역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료되는 바, 위 규정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3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관급자재 비용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2699]

2019. 5.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제안한 부분의 관급자재를 입찰금액에 합산하여 입찰하도록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해당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된 경우, 정산방법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 대상에 관급자재 포함 여부

답변내용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7조에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토록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입찰자 중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6인을 선정한 후 제131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확정한 설계서에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제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과 달리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채택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관급자재 대상 등을 확정하고 산출내역서에 해당 관급자재의 구매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이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제안 채택된 부분의 관급자재 물량·금액 등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따라서, 관급자재 구매비용이 부족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고 구매대금이 남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관급자재 비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4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대가 지급 후
차수준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855]

2017. 4. 13.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1차분 준공대가 지급 후 해당 차수 준공분의 물량오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차”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차수별) 계약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는 해당 연차별(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함

15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997]
2017. 2. 23.

질의요지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으로 체결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단순 착오로 인한 과다·과소 계상 항목의 정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라 함) 제6절 “1-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바,
 - 설계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가-2”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나”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 사유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으며, 내역입찰 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착오 정정은 계약 체결 전에 할 수 있음

1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933]

2018. 10. 1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시설관리용역계약 진행 중 근로기준법 개정(2018. 5. 29.)으로 연차유급 휴가일수가 증가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에서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 체결 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7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387]

2018. 5. 21.

질의요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통합 위탁하기 위해 기 체결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계약을 변경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 제74조(설계변경),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은 당초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과업내용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초 과업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되는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과업으로 보아야 함



제8장

부정당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제8장 부정당 제재 및 과징금 부과

01

**입찰 전 상호변경 등록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802]
2020. 9. 18.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전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 무효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관한 질의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계약상대자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로 판단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나목에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나,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 전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입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포기각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와 구체적 제한사유는 입찰자의 고의·위조·변조 등 사실 관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02

**계약 체결과정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230]

2017. 6. 26.

질의요지

- 낙찰자 선정(6. 19.) 후 계약체결 과정 중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업체 패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0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다른 법령인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03

대표자에 변경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자

[회계제도과-2679]

2019. 5. 30.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 미처리, 지연처리 등 계약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해지를 한 계약에서 계약상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이 종전 대표이사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그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하는것이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부정당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04

물품계약 하도급 시 부정당제재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4022]

2018. 8. 2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하여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의 방법(제9조), 입찰 공고(제10조), 낙찰자 결정(제13조) 등 계약절차에 관한 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 등 계약 쌍방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한 법으로 발주기관이나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시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 사업자의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134]
2019. 11. 11.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은 별도로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에서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는 각각의 동등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계약상대자 등이 협정, 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

06

복수 대표인 법인사업자의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자

[회계제도과-2803]

2018. 6. 5.

질의요지

- 자치단체가 발주한 설계용역계약을 A, B(A-건축사 분야, B-문화재실측업 분야)가 각자 대표로 있는 용역사와 체결하였으나, 등록요건 미달로 문화재실측설계업 면허가 폐업처리(2018. 2. 14.)되고 B가 사임(2018. 2. 6.)
 - 이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의 대상은 법인 전체로 해야 되는지, B만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인 해당 법인 및 입찰·계약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에게 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7

부정당제재 처분 면제 또는 유예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704]

2018. 2. 9.

질의요지

- 1) 청문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진술과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정당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 처분의 시기를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예 : 1년)까지 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문 결과 부정당 제재처분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처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당 제재처분의 시기를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08

타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사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332]

2020. 8.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정지기간 중 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로 보아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은 입법취지와 목적, 적용범위 및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임

제8장

부정당 제재 및 과징금 부과

09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63]

2020. 2. 4.

질의요지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조정권고(과징금 갈음) 수용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는 계약의 목적·내용, 위반상황 및 처분사유, 계약심의위원회·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
- 한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하여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권고 수용 여부는 조정권고의 취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

10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회계제도과-4331]

2020. 8. 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대표자의 개인사업체 또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견적서 제출자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영 제92조제6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11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사유로 해당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1266]

2019. 3. 2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회생 인가 결정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의 '정당한 이유'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부도(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계약의 내용, 진행 상황, 계약상대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12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009]
2018. 11.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2-나'에 계약문서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이행 완료단계의 주요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나-15)'에서 정한 그 밖의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되므로 준공대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이행상황,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 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745]

2019. 2. 18.

질의요지

- 1) 자재승인을 받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시험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명시된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및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면,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2)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고,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은 특정 공법시공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제품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나”에 따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도 계약문서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시험보고서가 위 기준의 계약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반의 경중 및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계약의 목적·내용, 계약상대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업체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부정부당업자 제한 사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면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가능함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받은 경고처분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사유인지 여부

[회계제도과-1295]

2020. 3. 18.

질의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담합)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의 행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해당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제5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담합)로 경고처분한 행정행위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계약의 목적·내용, 위반상황 및 처분사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시기

[회계제도과-5252]

2019. 10. 1.

질의요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아닌 이미 준공되어 발주기관에 인도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고용노동부 및 경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시기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처분대상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및 경찰의 조사결과를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제재의 구체적 사유, 근거자료, 계약상대자의 진술 내용,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회계제도과-4344]

2020. 8. 31.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구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명의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의회 사무과장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가능할 것임

17

제3자 뇌물 제공행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420]
2020. 10. 22.

질의요지

제3자 뇌물을 공여한 업체의 행위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 상대방"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뇌물제공의 원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등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는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같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3자 뇌물 공여 등 사실관계,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8

발주기관의 협약 미체결로 인한 낙찰자의 계약이행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691]

2019. 5. 30.

질의요지

일부 특수한 성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계약에서 발주기관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자치단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라-2"에서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입찰공고 전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약속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격 제한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반영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정상적인 물품공급·기술지원 약속서를 받지 못해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규격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9

부정당제재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회계제도과-2690]

2019. 5. 30.

질의요지

대표사와 분담이행사간에 계약이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잔여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 공동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제한 대상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결과가 지방계약법령을 반하는 등 적정성·적법성을 벗어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 처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0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척기간

[회계제도과-4124]

2019. 8. 7.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를 하도급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부칙(2018. 12. 24.) 제1조에 따르면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처분 당시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의 "행위가 종료된 때"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이 종료(문서상의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약행위가 종료된 시점)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1

입찰담합업체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4716]

2020. 9. 17.

질의요지

- 특정인 낙찰을 위한 입찰 담합이 발생한 경우
 - 1) 담합을 주도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2)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의 “행위가 종료된 때”의 의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입찰자·견적서 제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자가 당해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제2호 및 제7호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가 종료된 때”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행위가 종료된 때로, 입찰 담합의 경우 입찰가격·특정인 낙찰 등에 대하여 합의한 자가 그 내용을 기초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일(투찰일)을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 내용의 구체적 범위 및 실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2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실을 미 적시한 입찰 참가업체의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5749]

2020. 11. 6.

질의요지

- 공사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 A업체*의 적격심사 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 * 나라장터에 건설업 등록 되었으나, 영업정지에 대한 사실 미 적시
 - 건설업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한 A업체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배제 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갖춘 자만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다'에서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 등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지방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입찰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만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 여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계약담당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조치 등 사실관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3

부정당 제재처분 제척기간 판단기준

[회계제도과-1079]

2019. 3. 12.

질의요지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6항(제척기간)이 신설되었을 경우, 처분의 가능 여부 및 해당 행위의 종료 시점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을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여야 하나,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18년 12월 24일 이후 적용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아울러 위 규정의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행위의 종료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24

계약체결 시 존재한 위반사유를 계약 이행 완료 후 제거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사유 해당여부

[회계제도과-5627]

2018. 11. 8.

질의요지

계약체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를 위반하였으나, 계약 이행 완료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법 제33조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경우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 완료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위반행위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당시의 위반행위까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지방계약법」 제33조의 규정은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자를 변경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5615]

2019. 10. 22.

질의요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관리계획(하수급자) 변경 요청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사후 승인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제31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에서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사후 승인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내용, 현장상황,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포기 시 부당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회계제도과-406]

2017. 8. 17.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입찰무효 처리하였고, 2순위자가 협상 전 "협상 포기서"를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곤란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로는 다른 협상적격자보다 최우선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협상이 성립되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입찰절차를 통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낙찰자의 지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임

27

관계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제제 처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059]

2020. 11. 24.

질의요지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응제공 등 사실관계,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제9장

공동계약

제9장 공동계약

01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의 공동계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614]
2020. 4. 6.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이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을 동일 법인으로 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 모두가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동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02

공동계약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단독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253]

2020. 7. 6.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A업체(대표사 지분율 80%), B업체(지분율 20%)와 용역계약 중에 B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업자 폐업(부도, 파산은 아님) 및 중도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A업체가 B업체의 지분율 20%를 흡수하여 A업체와의 단독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가-1)”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2)”에서 계약담당자는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발주기관과 구성원이 모두 탈퇴구성원의 탈퇴를 동의하고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모두 이전받아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03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적정 여부

[회계제도과-1410]

2017. 5. 17.

질의요지

- 「□□도시철도 건설공사(전기·신호·통신)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1순위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혼합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1순위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1. 전기분야(59%) : 전기 공동이행 → A업체(39%) + B업체(20%)
소방 분담이행 → A업체(100%)
2. 신호분야(18%) : 분담이행 → C업체(100%)
3. 정보통신분야(23%) : 분담이행 → D업체(100%)

답변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위 요령 제2절 '1-다-5'에 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②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혼합방식을 허용한 공동계약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입찰공고문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됨

04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변경 승인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71]

2017. 1. 10.

질의요지

- 공동도급사 B건설이 경영난으로 계약체결 이후 1년간 발주기관에 보고도 없이 보유 지분율을 미 이행하여 A건설과 C건설이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약 30%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B건설이 지분율 일부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분율 변경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변경 신청 내용〉

- 당초 : A 건설(51%), B 건설(30%), C 건설(20%)
- 변경 : A 건설(72%), B 건설(1%), C 건설(27%)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4절 “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에 따라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나, 단순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는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음

05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을 공동수급체로 제한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95]

2017. 1. 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건물종합위탁관리용역을 입찰하면서 필수적으로 공동수급체가 입찰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음
- 같은 시행령 제36조제14호에 따르면 입찰공고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 이는 입찰공고 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단독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0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추가 선임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397]

2018. 3. 26.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이행중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을 추가하여 혼합방식으로 이행하도록 추가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공동계약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 항목에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 및 구성원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 및 구성원의 추가가 가능할 것이나, 발주기관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분담방식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의 특성 및 기존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합의에 의한 추가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07

공동계약 구성의 적정성 여부

[회계제도과-3994]

2019. 7. 3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혼합방식을 허용한 공사입찰에서 대표사인 A사가 석면해체·제거와 비계·구조물해체를 담당하고, B사가 석면해체·제거, C사가 비계·구조물해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에서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서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표사인 A사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한 경우라면, A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 무효에 해당됨

08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3307]

2020. 7. 8.

질의배경

구성원이 2인인 공사의 공동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와 같이 출자비율 변경 요청

아 래		
구성원	변경 전 지분율	변경 후 지분율
A(대표사)	51%	0%
B	49%	100%

질의요지

- 1)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가능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잔여 구성원 1인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 2)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실적만으로 적격처리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실적제한 심사요건 충족 판단시점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에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중도탈퇴의 사유(이하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절 “8-나-2)”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5-가-1)"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발주기관과 구성원이 모두 탈퇴구성원의 탈퇴를 동의하고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모두 이전받아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잔존 구성원이 실적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초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내용 변경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09

대표자가 동일한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3032]
2017. 12. 28.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는 같으나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 무효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동일한 입찰에 2개의 법인(대표자는 동일)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0

공동계약인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귀속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358]

2017. 6. 29.

질의요지

A사와 공동수급체(A사 전기, B사 전기, C사 소방)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과업을 수행하던 중 B사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B사의 지분을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D사에서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동수급체로부터 중도 탈퇴한 사안에서 B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A사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 불이행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4674]

2018. 9. 28.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계약보증금 납입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구성원에 대한 수의계약배제사유 적용의 타당성 여부

답변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같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4-가-1)”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같은 절 “5-가-2)”에서도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 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성원별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귀책사유, 협정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12

공동수급체의 실적 인정 범위

[회계제도과-3254]

2020. 7. 6.

질의요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에서 혼합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시공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만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도 인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2)-나-(3)’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 있어서 혼합방식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구성원이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시공실적을 보유·제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타 분야를 시공하려는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함

13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해당 범위

[회계제도과-859]
2018. 2. 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2개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2개 또는 3개의 시·도 모두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현장이 2개 또는 3개의 시·도에 모두 걸쳐 있는 경우라면 해당공사현장이 걸쳐있는 모든 시·도의 소재업체를 모두 지역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4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공고 시 시공능력평가액의 검토기준

[회계제도과-1778]

2020. 4. 16.

질의요지

- 1) □□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대부분의 구간이 ○○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에 소재하고 있을 때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광역시 업체만 참여 가능한지 여부
- 2)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려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일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 10인 검토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중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29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마-1)’에서 법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에서 토목건축 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 공사현장의 관할 시·도는 발주기관이 아닌 현장이 위치한 광역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현장이 걸쳐 있는 모든 시·도의 업체를 지역업체로 보아야 함

2) 관련

- 해당 계약목적물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토목공사에 해당하여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경우라면 토목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10인 이상 여부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5

분담이행방식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

[회계제도과-2009]

2018. 4. 27.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공고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비율이 60 : 40 이었으나, 조달청에서 최종 확정된 조사내역서상 비율이 72 : 28로 바뀐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토목과 건축비율을 어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6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 분담내용은 동 협정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내용을 명시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나-2)”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별 분담비율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분담내용을 명시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원할한 대가지급 및 공사진행 등을 위해서는 최종 확정된 공사기초금액산출(조사)내역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분담비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새롭게 산출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의 업체가 공사(분담내용)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16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이행 내용을 누락하고
입찰한 경우 공동계약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978]

2020. 11. 20.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누락*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로 무효인지 여부

* 공동수급협정서에 자격요건(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중간재활용업) 중 중간처리업 누락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 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단서에서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서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3’에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3-나’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계약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구성원 상호간 분담내용·의무·책임 등을 명확히 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은 단독입찰과 달리 계약이행자가 다수인 공동계약 목적물의 적정 이행을 위하여 공동 계약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수급 협정서 상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분담이행 내용이 일부 누락되었다면 계약목적의 완성에 필요한 공동수급체가 이행할 계약내용의 흠결로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무효인 입찰임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020년 12월 30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김 동 현

□ 발 행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5층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TEL: 02-3274-2340

FAX: 02-3274-2307

URL: <http://www.lofa.or.kr>(지방계약 e정보방)

□ 해석편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경태 과 장

최교신 사무관

임남순 사무관

박경숙 주무관

방래혁 전문위원

이동인 전문위원

이서홍 전문위원

정은화 전문위원

주진광 전문위원

□ 해석편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관리부

최대진 부 장

□ 편집·인쇄: 경성문화사(T.02-786-2999)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

